| 신안산대학교 | 강사인사 규정 | 규 정 번 호 | 2-3-14 |
|---|---|---|---|
| | | 제 정 일 자 | 2019. 7. 15. |
| | | 개 정 일 자 | 2024.3.20. |
| | | 책임부서/팀·계 | 교무처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강사는 학생을 교육·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, 지도,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3조(종류)** 강사는 강의전담강사, 연구담당강사, 산학협력강사로 한다.

**제4조(임용원칙)** ①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· 출산휴가 · 휴직 · 파견 · 징계 · 연구년(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· 퇴직 ·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2.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 [별지 3]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3.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채용이 필요한 경우

**제5조(자격)**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1.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
2. 만65세 이하인자

**제6조(임용기간)**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**제7조(임용시기)**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강사의 신규임용 계약은 매 학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임용계약)**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한하며,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,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급여
3. 복무 등 근무조건
4. 면직사유
5. 담당 과목 또는 강의
6.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

**제9조(임용분야 및 임용인원)**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 대학 교과과정, 예산, 해당 학과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임용공고)** 강사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, 임용인원, 지원 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.

**제11조(제출서류)** 강사의 신규 임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강사 추천서 1부. (학과 추천 시)
2. 강사 임용지원서 1부.
3. 학력 및 성적증명서 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.
4. 재직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.
5. 소속 기관장의 겸직 동의서 1부.
6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**제12조(심사기구 구성)** ① 신규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과의 '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' 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

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 · 부교수 · 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심사위원회 제척 · 기피 · 회피)**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거나 가족 · 친족이었던 경우)
2.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, 지연 등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(回避)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심사위원회의 위촉 해지)**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5조(심사구분)**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1. 기초심사 :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
2. 전공심사 :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, 산업체 경력
3. 면접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

②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6조(신규임용심사)** ① 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.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명기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수 순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까지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단 지원자수를 고려하여 2~7배수까지 범위내로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임용제청)** 총장은 대학(교원)인사위원회에 임용 예비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동의를 제청한다.

**제18조(임용유보)**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
2. 학과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기타 대학(교원)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

**제19조(임용취소)** 대학(교원)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은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20조(예비순위자임용)**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(또는 후)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**제21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**제22조(당연퇴직)** ① 임용기간 만료 후,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
② 국가공무원법 제69조,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.

**제23조(재임용)**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(개월)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.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

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 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한다.

**제23조2(재임용 거부)**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, 소속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학과의 전임교원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,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24조(재임용기준)**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[별지5,6] 강사 재계약 학과평가표와 강의 설문 평가표에 의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강의 설문 평가를 하지 않는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[별지7] 강사 재계약 학과평정표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의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. <2020.10.12. 개정> <2021.12.23. 개정> <2022.04.21. 개정>

**제25조(재임용심사)**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26조(강사의 의무)**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
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) 작성
2.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
3.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

**제27조(강사의 소속)** 강사가 본 대학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28조(타교 강의)** 강사는 타교에 강의할 수 있다. 다만, 연속하여 2개 학기 9학점 이상의 강의를 하는 강사는 겸 · 초빙 교원으로만 출강할 수 있다.

**제29조(급여)** 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0조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)** 강사는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출산휴가 및「남녀고용평등과일 ·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31조(면직사유)**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.

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
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4. 학부(과)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
5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
6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경우

7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8.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가.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

나.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다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
9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
10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
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신규강사 임용을 위한 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규 강사 임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재임용 심사를 위한 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심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| 학 력 / 연구·교육 / 경력연수 / 직 명 | 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 | | | 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연구실적 연수 | 교육경력 연수 | 계 | 연구실적 연수 | 교육경력 연수 | 계 |
| 강 사 | 1 | 1 | 2 | 1 | 2 | 3 |

비고 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[별지 2]

# 교원임용지원서

| 접수번호 | / |
|---|---|

0000학년도 0학기

| 지원구분 | 강사 | 지원학과 | | 지원분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한 글 | | 생년월일 | | | | 사 진<br>(3㎝ × 4㎝) | |
| | 한 문 | | 연 령 | 만 ( )세 | 성별 | | | |
| | 영 문 | | 국 적 | | 종교 | | | |
| 연락처 | 현주소 | ( ) - ( ) | | | | | | |
| | 자택 전화 | | 직장전화 | | | | | |
| | 휴대폰 | | E-mail | | | | | |
| 직 장 명 | | | 직 위 | | | | | |

| 병역관계 | | 미필/면제사유 | |
|---|---|---|---|

| 학 력 사 항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분 | 학교명 | 학 과 | 세부전공 | 학위명 | 평점/만점 | 기 간 |
| 고등학교 | | | | | | 0000.00.00<br>~0000.00.00 |
| 전문학사 | | | | | | 0000.00.00<br>~0000.00.00 |
| 학 사 | | | | | / | 0000.00.00<br>~0000.00.00 |
| 석 사 | | | | | / | 0000.00.00<br>~0000.00.00 |
| 박 사 | | | | | / | 0000.00.00<br>~0000.00.00 |
| 학위논문명 | 석사학위 논문제목 | | | | | |
| | 박사학위 논문제목 | | | | | |

| 가족관계 | 관 계 | 성 명 | 연 령 | 직 업 | 관 계 | 성 명 | 연 령 | 직 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[별지 3]

경력사항 목록

| 성 명 | | 지원학과 | | 지원분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1. 산업체경력

| 번호 | 기 관 명 | 부 서 | 직 위 | 담당업무 | 재직기간 | 재직연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| | |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2 | | | |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3 | | | |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4 | | | |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5 | | | |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
※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교육경력

2-1. 전임 및 겸임교원 이상

| 번호 | 대 학 명 | 소 속 | 직 위 | 담당과목 | 재직기간 | 재직연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| | | 1.<br>2.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2 | | | | 1.<br>2.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3 | | | | 1.<br>2.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| 4 | | | | 1.<br>2. | 0000.00.00<br>~ 0000.00.00 | 년 개월 |

※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산업체 및 교육 경력사항은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
2-2. 강사

| 연도 | 학기 | 강 사 교 육 경 력 | | | | | | |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대학명 | 강의시간 | 대학명 | 강의시간 | 대학명 | 강의시간 | 대학명 | 강의시간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| | 1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 |

※학년도 기준 : 1학기 (3. 1 ~ 8. 31), 2학기 (9. 1 ~ 2. 28)

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
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

[별지 4]

강사 추천서

| 학 과 명 | | | 구 분 | 강사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 적 사 항 | 성 명 | | 생년월일 | 년 월 일 (만 세) |
| | 본직기관명 | | 전화번호 | |
| | 직 위 | | 핸드폰 | |
| | 현 주 소 | | | |

| 학 력 사 항 | 구분 | 기 간 | 학 교 명 | 학 과 | 전 공 | 학위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학사 | . . . ~ . . . | | | | |
| | 석사 | . . . ~ . . . | | | | |
| | 박사 | . . . ~ . . . | | | | |

| 주 요 경 력 | 기 간 | 기 관 명 | 직 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. . ~ . . . | | | |
| | . . ~ . . . | | | |
| | . . ~ . . . | | | |
| | . . ~ . . . | | | |
| | . . ~ . . . | | | |

| 담 당 과 목 | 담당과목 | 담당시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| 추천 사유 | |
|---|---|

20 년 월 일

위와 같이 강사로 임용하고자 추천합니다.

과 학과장 : (인)

**소속학과 교수 동의 날인**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

신안산대학교총장귀하

[별지 5]

강사 재계약 (학과) 평정표

| 학과 | | 직위 | | 성명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| 번호 | 평가항목 | 평가점수 | |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학과발전 기여도 | A(매우우수) (15점) | B(우수) (12점) | C(보통) (9점) | D(미흡) (6점) | E(매우미흡) (3점) | |
| | | | | | | | |
| 2 | 학과 교수와의 인화관계 | A(매우우수) (15점) | B(우수) (12점) | C(보통) (9점) | D(미흡) (6점) | E(매우미흡) (3점) | |
| | | | | | | | |
| 3 | 강의능력 및 성실성 | A(매우우수) (20점) | B(우수) (17점) | C(보통) (14점) | D(미흡) (11점) | E(매우미흡) (8점) | |
| | | | | | | | |
| 4 | 강사로서의 책무와 자세 | A(매우우수) (20점) | B(우수) (17점) | C(보통) (14점) | D(미흡) (11점) | E(매우미흡) (8점) | |
| | | | | | | | |
| 합 계 (70점) | | 점 | | | | | |

| 종합의견 | |
|---|---|

20 년 월 일

학 과 직 위 성 명

(인)
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

[별지 6]

강의설문 평가표

| 학과 | | 직위 | | 성명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| 평가항목 | | 점수 | 평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**강의설문조사결과** | 평점 × 6 | | 30 | 직전학기 |
| **소 계** | | | **30** | |

※산정기준 :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

[별지 7]

강사 재계약 (학과) 평정표

| 학과 | | 직위 | | 성명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| 번호 | 평가항목 | 평가점수 | |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학과발전 기여도 | A(매우우수) (20점) | B(우수) (17점) | C(보통) (14점) | D(미흡) (11점) | E(매우미흡) (8점) | |
| | | | | | | | |
| 2 | 학과 교수와의 인화관계 | A(매우우수) (20점) | B(우수) (17점) | C(보통) (14점) | D(미흡) (11점) | E(매우미흡) (8점) | |
| | | | | | | | |
| 3 | 강의능력 및 성실성 | A(매우우수) (30점) | B(우수) (25점) | C(보통) (20점) | D(미흡) (15점) | E(매우미흡) (10점) | |
| | | | | | | | |
| 4 | 강사로서의 책무와 자세 | A(매우우수) (30점) | B(우수) (25점) | C(보통) (20점) | D(미흡) (15점) | E(매우미흡) (10점) | |
| | | | | | | | |
| 합 계 (100점) | | 점 | | | | | |

| 종합의견 | |
|---|---|

20 년 월 일

학 과 직 위 성 명

(인)
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